

#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45,295,494	34,358,865
일반회계	952,245,668	28,567,370
특별회계	193,049,826	5,791,495
공기업특별회계	154,961,965	4,648,85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125,967	2,133,77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835,998	2,515,080
기타특별회계	38,087,861	1,142,636
주택사업특별회계	80,000	2,4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625,598	228,768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834,861	355,046
교통사업특별회계	13,270,900	398,127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기반시설특별회계	33,000	990
수질개선특별회계	4,039,502	121,185

제 2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759,29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3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